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승희·컨슈머워치

프로그래밍

■ 개회사

- 김 승 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5

■ 축 사

■ 사 회

- 강 성 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국민연금 개편방안” 7

- 김 용 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토 론

- 옥 동 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31

- 곽 관 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35

- 김 우 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39

- 류 근 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43

- 곽 은 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45

개 회 사

김 승 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승희입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른바 ‘인구 쇼크’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급자는 1년새 20만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연금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숙명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시급하고 갈 길이 먼 연금개혁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있어 거대한 반발이 두려워 어느 한쪽도 선뜻 개혁안을 언급하기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처럼 연금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앞서 건너가고 있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역시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매우 큰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고 각종 연령과 직종별 대규모 장외집회에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해결책은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석 달 동안 국가 대토론기간을 정해 전국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국민들 앞에서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연금개혁을 돌파해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연금개혁의 진통을 앞두고 있는 한국 역시 프랑스의 사례로부터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지지율 하락이 두려워서 연금 개혁이 정말 꼭 필요한 개혁이 아닌 면피용에 그친다면 미래세대에 도움이 되진 못할망정 더 무거운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숨기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말씀드리고 몇 백번을 만나서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담대한 용기와 의지가 관철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분명 걷기 어려운 가시밭길이지만, 지금 우리가 걷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걸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안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한 데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컨슈머워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자료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국민연금 개편방안

김 용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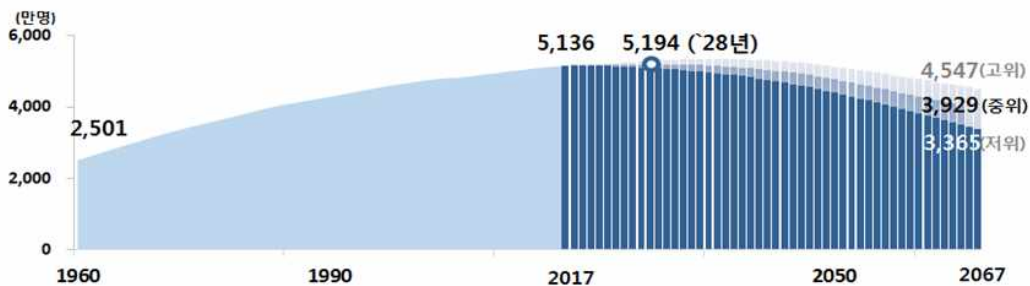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국 민 연 금 개 편 방 안



2019년 통계청 인구추계

➤ 총인구 : 2017년 5,136만 명 → 2067년 3,929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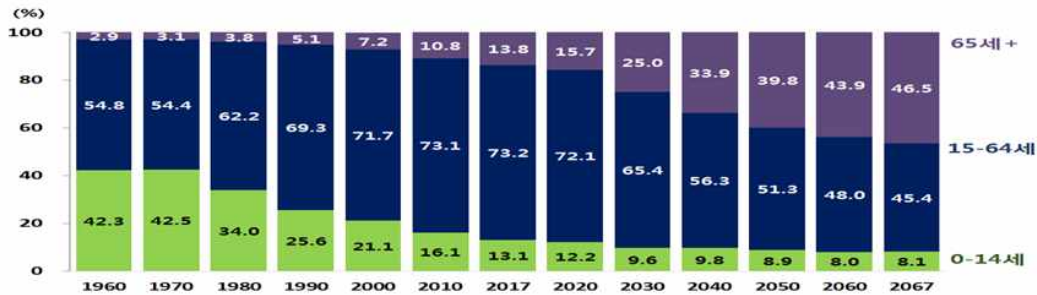


가정별 총인구수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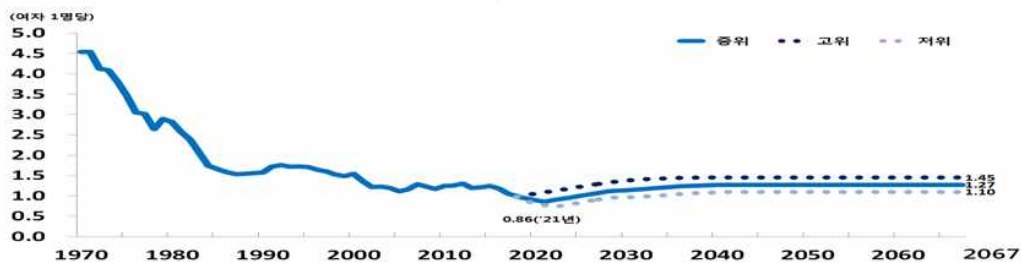
지표	시나리오	1960	1970	1980	1990	2000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인구 (만명)	중위 추계	2,501	3,224	3,812	4,287	4,701	5,136	5,178	5,193	5,086	4,774	4,284	3,929
	고위 추계						5,136	5,194	5,341	5,355	5,161	4,808	4,547
	저위 추계						5,136	5,164	5,065	4,831	4,401	3,801	3,365

2019년 통계청 인구추계

➤ 노인인구비율 : 2017년 13.8% → 2067년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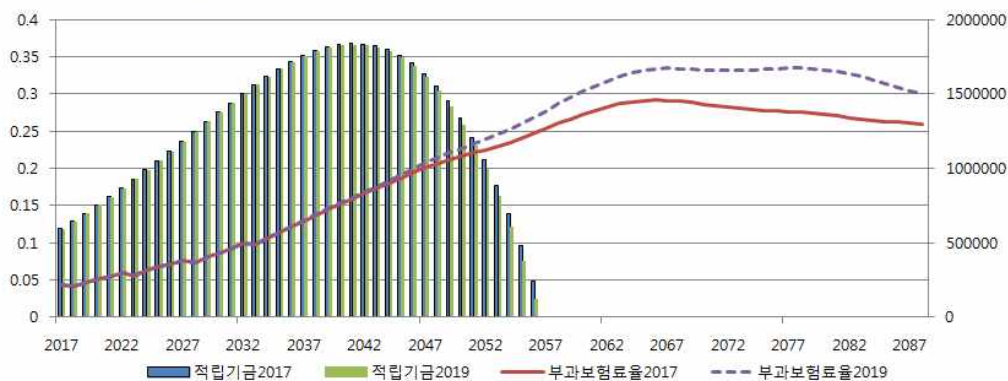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가정 (2017-2067)



3

2019년 인구추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동일, 부과방식보험료율 상승



✓ 70년 (2018-2088년) 재정전망

✓ 2017년 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2057년으로 동일

✓ 2060년기준 부과방식 보험료율 : 2017년 기준: 27.2%, 2019년 기준: 30.3%

✓ 현행 제도 유지 가정한 것임

4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17년 추계와 비교

➤ 2017년 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지출은 거의 동일, 수입의 감소폭 증대



- ✓ 2060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은 10.8% 감소함
- ✓ 2070년 15.2% 감소, 2080년 19.0% 감소
- ✓ 저출산에 따른 근로인구 감소, 2040년부터 효과 발생, 갈수록 심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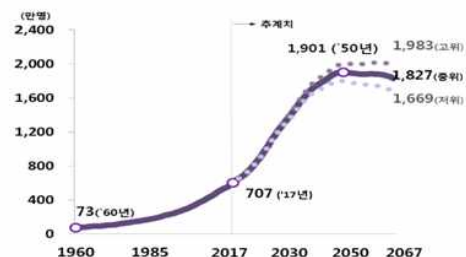
국민연금 재정전망 : 생산연령인구수의 감소

➤ 보험료 납입자인 청장년 연령계층의 감소가 보험료 수입 감소 결과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

- ✓ 생산인구 2017년 3,757만명
- ➔ 2067년 1,784만명
- ✓ 노년인구도 2050년을 정점으로 감소
- ✓ 노인인구비율 (부양비)은 증가



6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신뢰 제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

정부 역할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제도 내실화

다층보장 체계 강화

기초연금 개선, 퇴직연금 주택 농지연금 개선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전략적 자산배분,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 노후소득보장 +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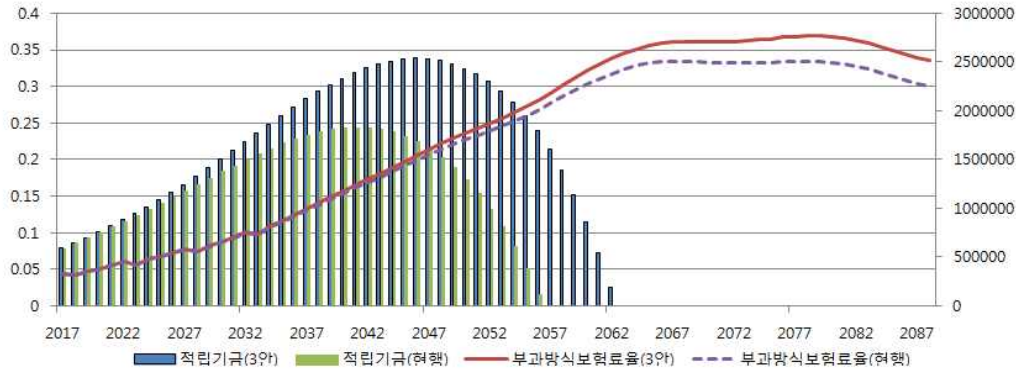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내용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
		소득대체율 40% 유지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40만원	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
기본모형 (소득대체율)		국민 40% + 기초 12% ²⁾ (52%)	국민 40% + 기초 15% ¹⁾ (55%)	국민 45% + 기초 12% (57%)	국민 50% + 기초 12% (62%)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현행 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현행 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21년 45%	‘21년 50%
	보험료율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기초연금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22년 이후 40만원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 ① 기초연금 강화방안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소득대체율은 '22년 A값의 15%로 계산
 ② 기초연금 30만원은 '22년 국민연금 A값의 약 12%에 해당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3안] 의 재정전망

➤ 연금보험료: 9% → 12%, 연금급여율: 40% → 45%



- ✓ 연금급여율 5%p 인상, 이에 대응 연금보험료를 3%p 인상
- ✓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 ✓ 2063년 적립기금 소진
- ✓ 부과방식 보험료율 : 2063년 34.6% , 2080년 36.8%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안] 의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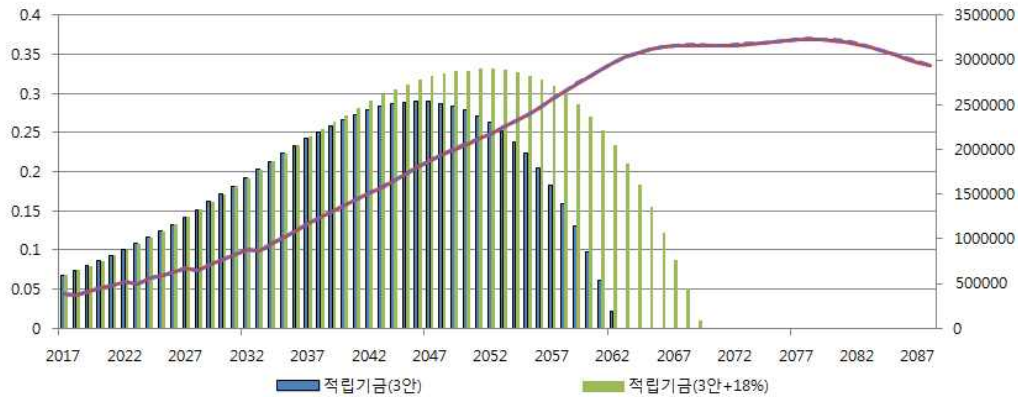
➤ 연금보험료: 9% → 13%, 연금급여율: 40% → 50%



- ✓ 연금급여율 10%p 인상, 이에 대응 연금보험료를 4%p 인상
- ✓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 ✓ 2063년 적립기금 소진
- ✓ 부과방식 보험료율 : 2063년 37.1% , 2080년 40.5%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3안] + 연금보험료 18%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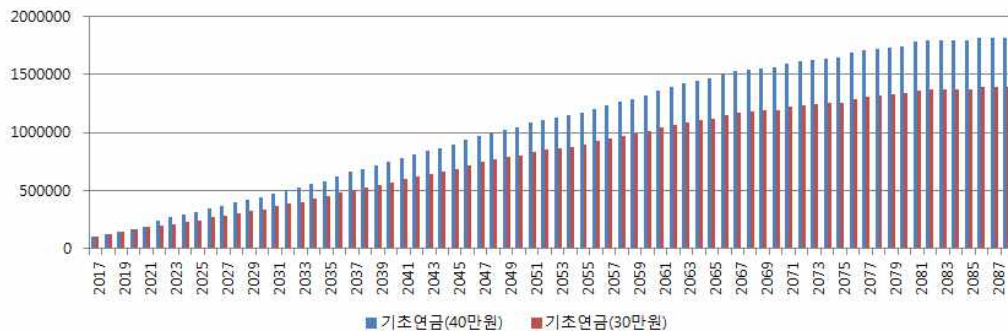
➤ 연금보험료: 9% → 18%, 연금급여율: 40% → 45%



- ✓ 연금급여율 5%p 인상, 연금보험료를 3%p 인상후 18%까지 단계 인상
- ✓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 ✓ 2071년 적립기금 소진
- ✓ 부과방식 보험료율 : 2063년 34.6% , 2080년 36.8% (3안과 동일)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기초연금 인상안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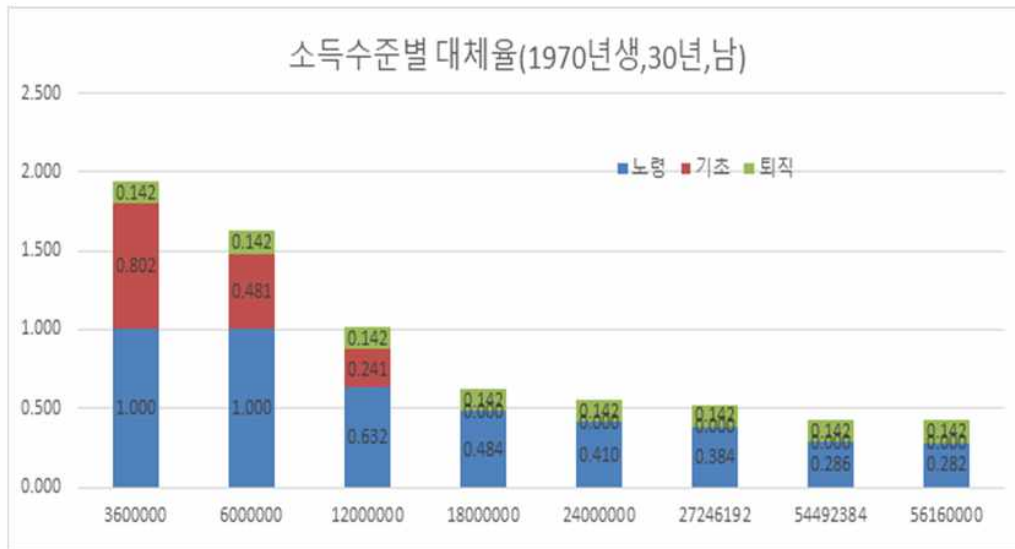
➤ 기초연금 정부예산 30% 정도 증가



- ✓ 기초연금은 조세 기반 정부예산으로 지출
- ✓ 기초노령연금 (10만원, 2008년) → 기초연금(20만원, 2014년)
- ✓ 기초연금(25만원, 2018년) → 기초연금 (30만원, 2019년 20% 노인, 2021년 전면)
- ✓ GDP 3% → GDP 4% (2060년경)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1] : 적정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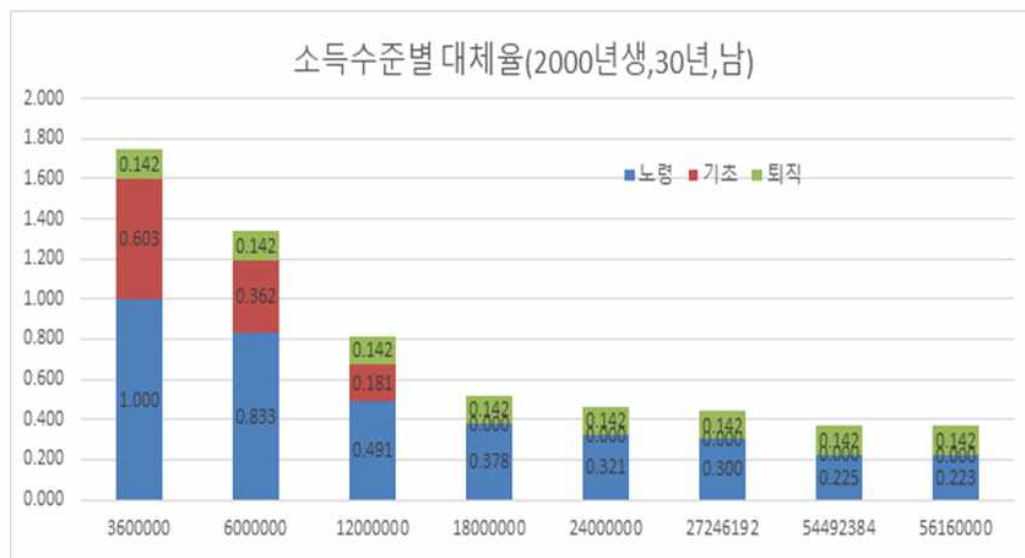
-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1970년생 기준, 30년간입, 남성)**
- ➔ **평균소득자 : 국민연금 38.4%, 퇴직연금 14.2%**



13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적정 소득대체율

-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2000년생 기준, 30년간입, 남성)**
- ➔ **평균소득자 : 국민연금 30.0%, 퇴직연금 14.2%**
- ➔ **1/2소득자 : 국민연금 49.1%, 퇴직연금 14.2%, 기초연금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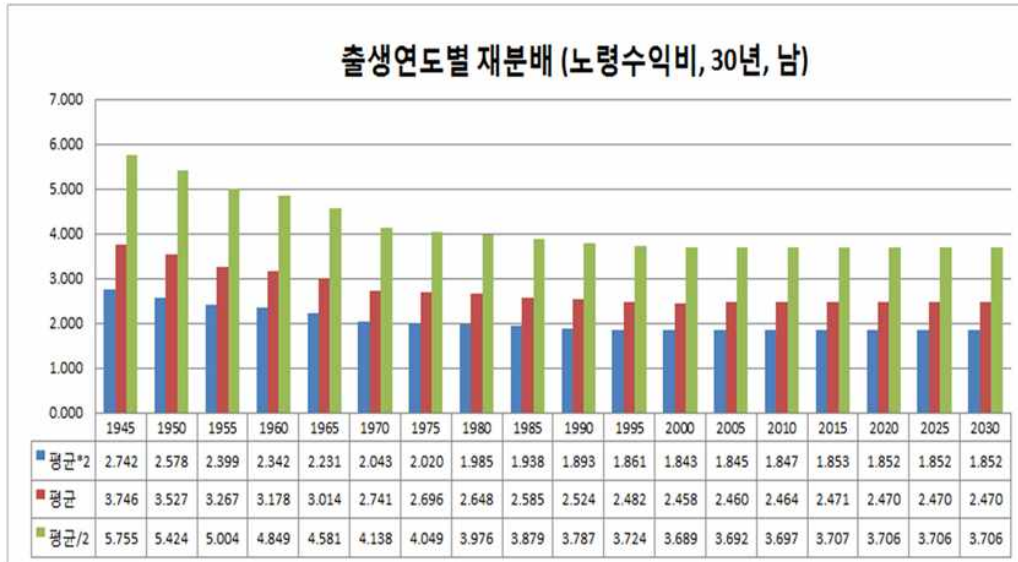


14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저부담 · 고급여 구조 개선

➤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노령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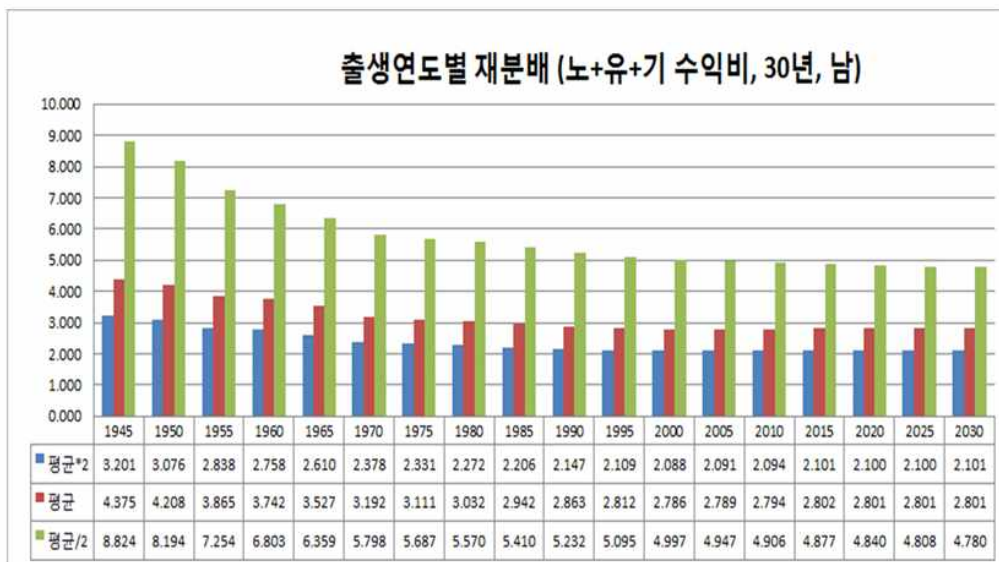
→ 전 세대, 전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0을 초과 : 저부담·고급여 구조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저부담 · 고급여 구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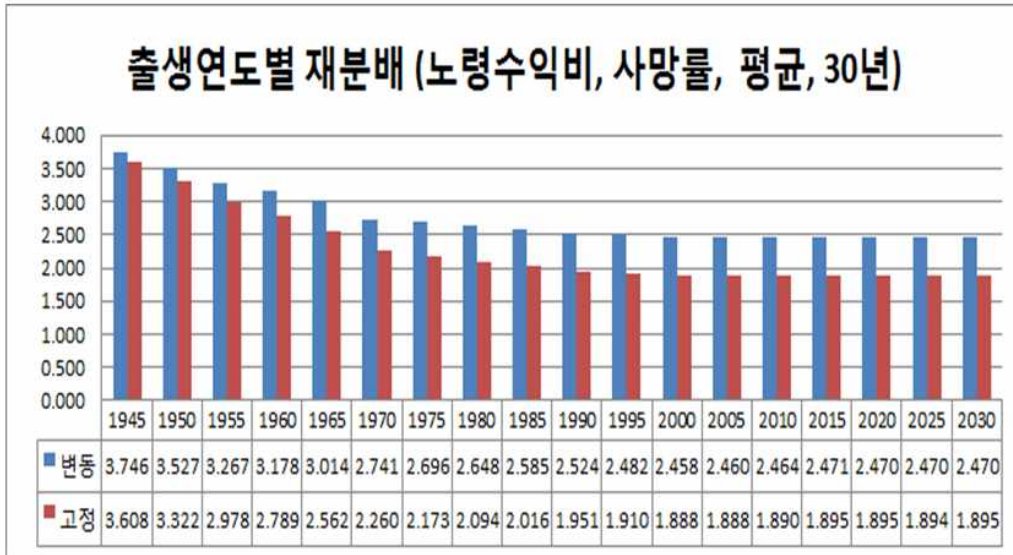
➤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노령연금+유족연금+기초연금)

→ 하위소득층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수익비 높아짐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저부담 · 고급여 구조 개선

-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2016년 평균수명 고정시)**
→ 기대수명 고정(2016년 기준) : 2.47배 → 1.89배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3] :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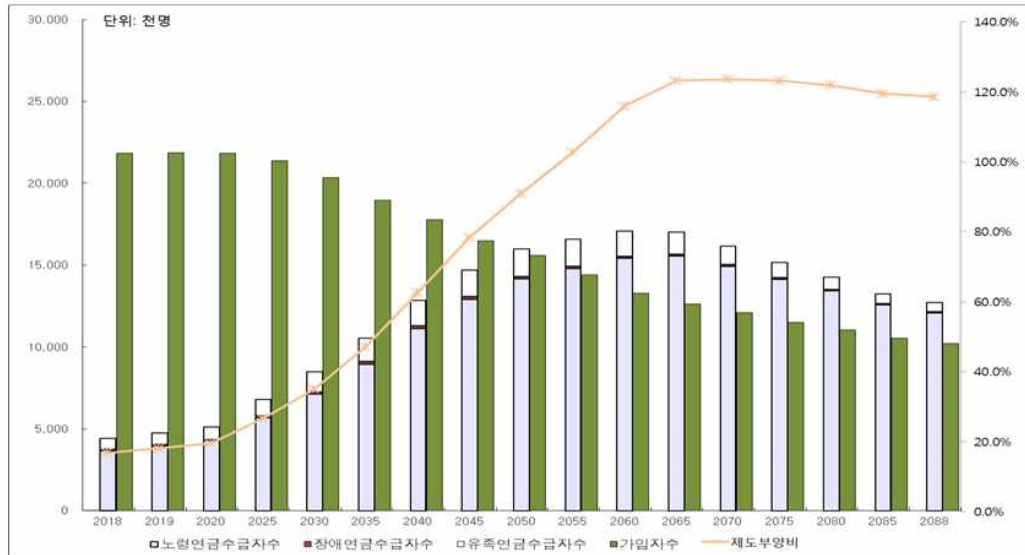
-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데 ?**
→ 유럽 대부분 국가의 공적연금은 이미 부과방식 전환
→ 부과방식은 부양비율에 의하여 근로세대 부담률이 결정됨
→ 우리나라의 2050년대 노인부양비는 세계 최고 수준 (77.6%)



18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3] :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 비율인 제도 부양비가 120% 선으로 상승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3] :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율) 변화

부과방식 비용률 장기 추이 전망

연도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총액 (가)	급여지출 (나)	GDP (다)	GDP 대비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총액 (가)/(다)	GDP 대비 급여지출 (나)/(다)	부과방식 비용률 (나)/(가)
2018	502,305	23,009	1,806,963	27.8	1.3	4.6
2020	549,469	28,500	1,984,946	27.7	1.4	5.2
2025	678,436	47,835	2,445,452	27.7	2.0	7.1
2030	811,739	72,985	2,924,580	27.8	2.5	9.0
2035	947,973	109,003	3,407,651	27.8	3.2	11.5
2040	1,091,203	162,941	3,928,053	27.8	4.1	14.9
2045	1,241,018	226,286	4,486,485	27.7	5.0	18.2
2050	1,434,787	297,728	5,096,405	28.2	5.8	20.8
2055	1,613,011	375,651	5,760,773	28.0	6.5	23.3
2060	1,805,740	483,593	6,454,771	28.0	7.5	26.8
2065	2,072,279	605,764	7,181,179	28.9	8.4	29.2
2070	2,390,572	710,663	7,966,870	30.0	8.9	29.7
2075	2,732,050	812,381	8,869,334	30.8	9.2	29.7
2080	3,141,781	927,604	9,909,947	31.7	9.4	29.5
2085	3,589,548	1,040,906	11,068,147	32.4	9.4	29.0
2088	3,868,136	1,115,234	11,816,028	32.7	9.4	28.8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4] : 기금 운용수익률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 2017년 이전 경상GDP 성장을 접근
→ 1988~2019년 7월말 누적수익률 5.52% (704조원)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수익률

(단위 : %)

구분	국민연금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
2007	7.0	-4.6	-0.3	-5.1	3.8	4.3
2008	-0.2	-7.6	-18.6	-24.0	-20.2	-23.3
2009	10.8	7.9	14.9	13.3	20.2	25.6
2010	10.6	-0.3	11.9	21.7	13.5	9.6
2011	2.3	2.3	6.6	0.1	3.3	-2.5
2012	7.1	10.2	10.1	13.2	13.7	13.4
2013	4.2	8.6	16.5	18.4	6.2	16.0
2014	5.3	12.3	18.7	2.4	14.5	7.6
2015	4.6	-3.8	3.7	0.6	2.7	2.7
2016	4.7	5.9	12.2	11.2	9.5	6.9
2017	7.3	6.9	11.9	-	7.6	13.7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국민연금 제도 개선 쟁점 [5] :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율	14%→13%	9%	국민연금의 2배
개시연령	60세/65세 → 65세 단계 이행	65세 (현재 62세)	2033이후 동일
유족연금	60%	60%	동일
연금 수입비	1.48 배 (7급 기준)	1.5 배 (평균소득 기준)	거의 유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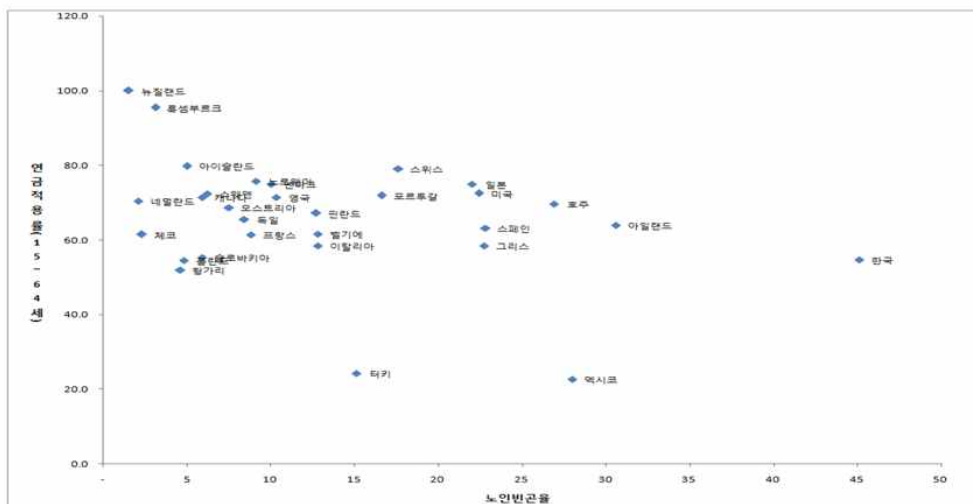
국민연금 제도 개선 쟁점 [5] :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식의 차이

- 2차례 있었던 국민연금 개편이 4차례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편과 가장 다른 점은 국민연금은 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공무원연금은 2015년 4차 개편이외에는 연금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되었다는 점.
-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는 43% 감소된 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5배가 되었음. 그 결과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9%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금 급여율은 40%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는 18%로 높아지고 있지만 연금급여율은 61.2%로 낮아졌음.
- 보험료와 연금을 함께 균형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연금을 낮추는 것이 먼저이고 보험료를 나중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에 상응하는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권을 낮추어야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감소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보험료 인상 방법을 택한 것은 단기적으로 재정효과를 보기 위한 것임.

노후 소득보장 개편방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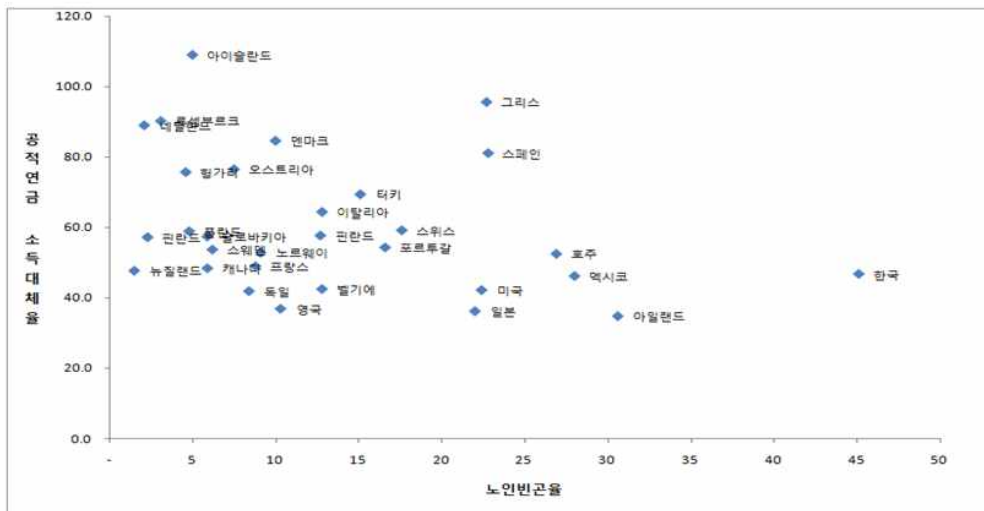
- 노인빈곤을 OECD 국가 최고위 (공적연금 도입지체와 적립식 제도)
→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낮은 여성고용 등으로 공적연금 적용률 저조



자료: OECD 통계 재구성

노후 소득보장 개편방향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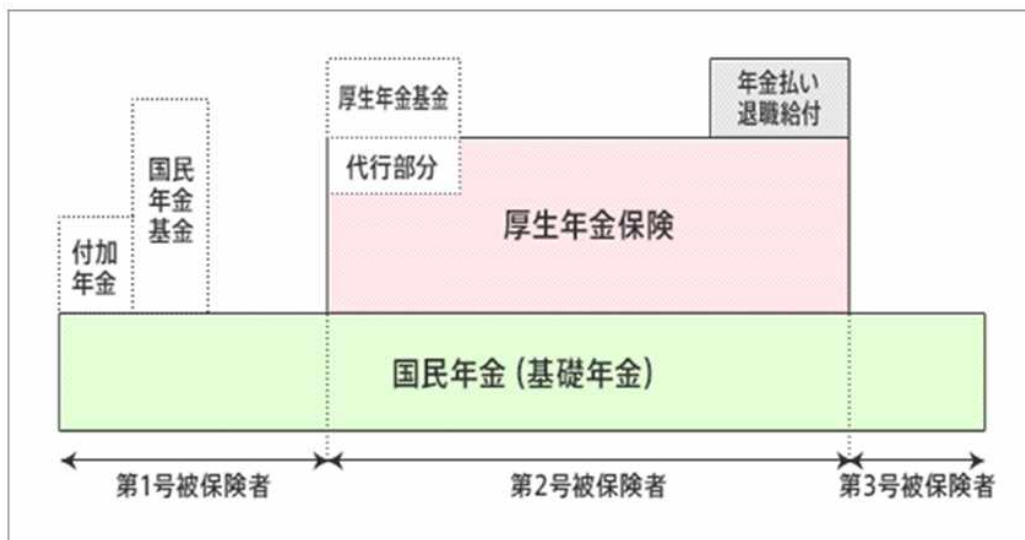
- OECD 국가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수준
→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과 유사 :



자료: OECD 통계 재구성

노후 소득보장 개편 [일본]

-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통합 (후생 + 공무원 + 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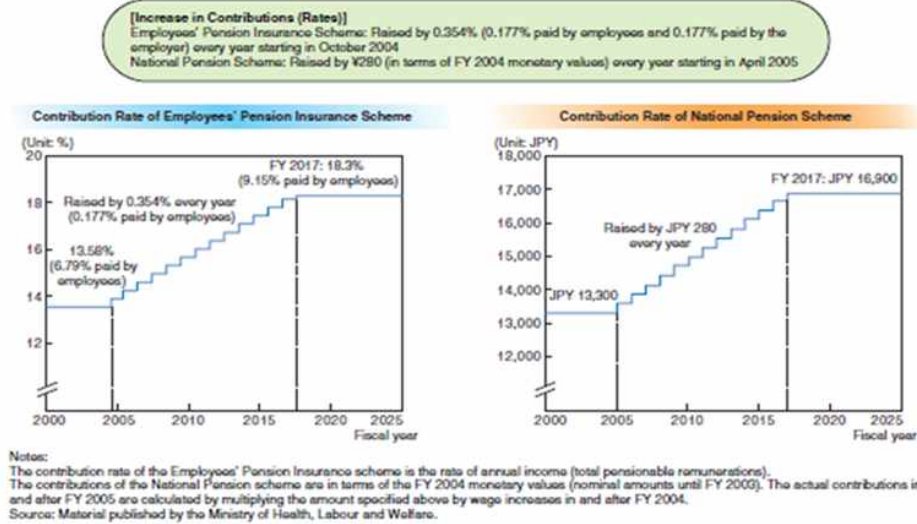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7

노후 소득보장 개편 [일본]

➤ 수지상등 연금보험료를 상한 (18.3%) + 자동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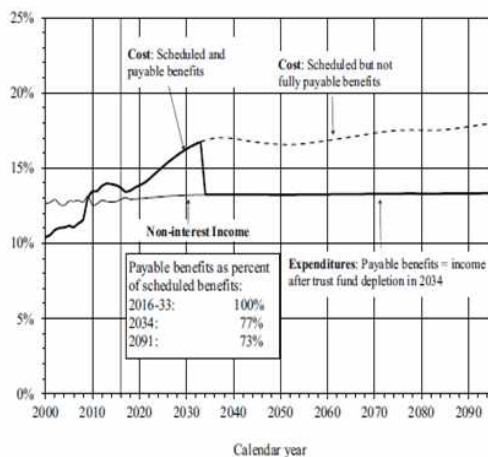
Figure 1. Contributions (Rates) Stipulated by Law for Employees' Pension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Schemes



노후 소득보장 개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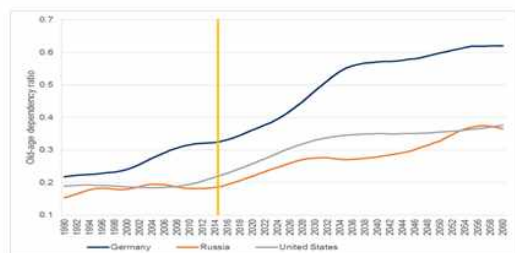
➤ 비용율이 소득율을 초과 → 인구구조 건전성 유지로 재정안정 가능

비용률과 소득률 동향



자료: 미국 OAS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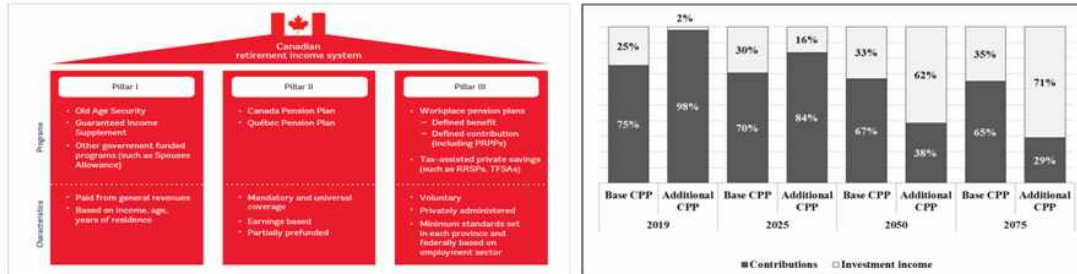
부양률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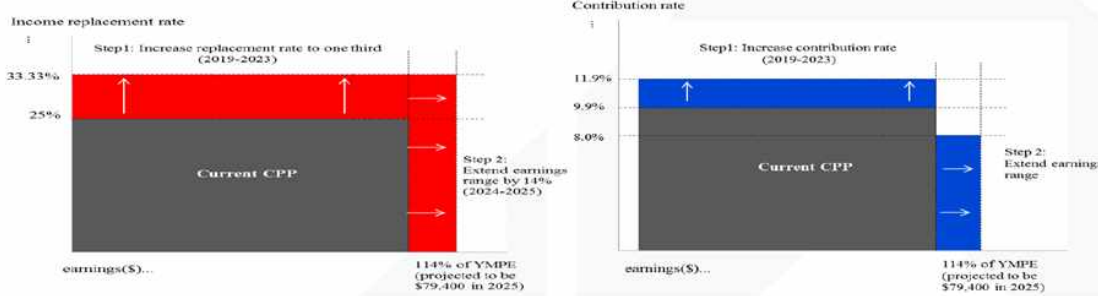
- 사회보장신탁기금이 2035년 고갈
- 지출율이 수입률을 계속 초과
- 수지차율이 향후 75년간 2.83%
- 장기 재정건전성 기준(향후 장기 추계기간 75년의 마지막 년도의 적립률이 0 이상)
- 보험료: 현재 12.4%에서 15% 인상 OR
- 급여:수급자와 가입자 급여17%삭감

노후 소득보장 개편 (캐나다)

➤ 1998년 개혁 : 기초연금 (정부재정) + 소득비례연금 (수지 상등 보험료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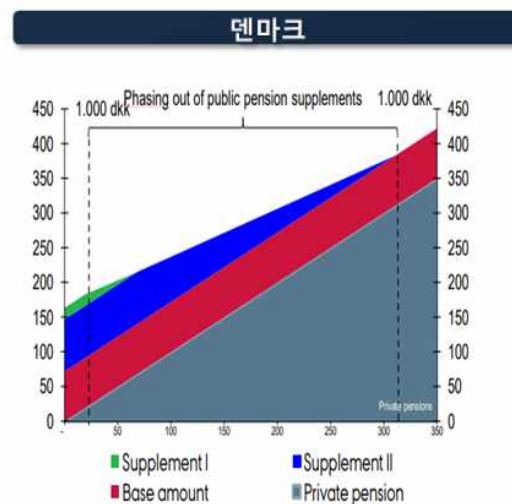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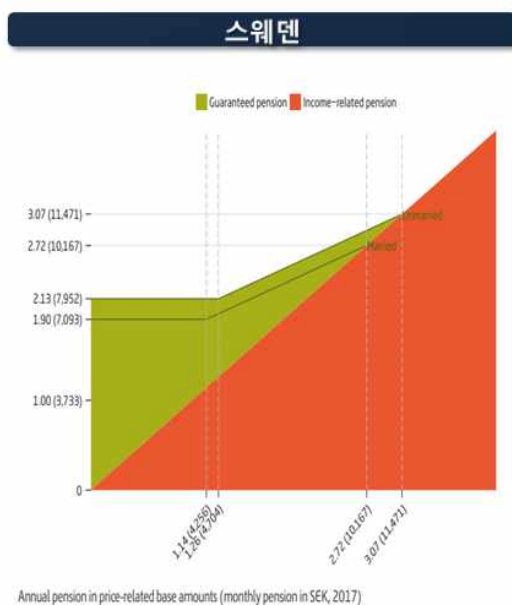
➤ 2019년 개혁 = 보험료 인상 + 급여율 인상 → 수지균형 체계 전제



29

노후 소득보장 개편 (북유럽)

➤ 소득비례연금 + 기초연금 (or 최소보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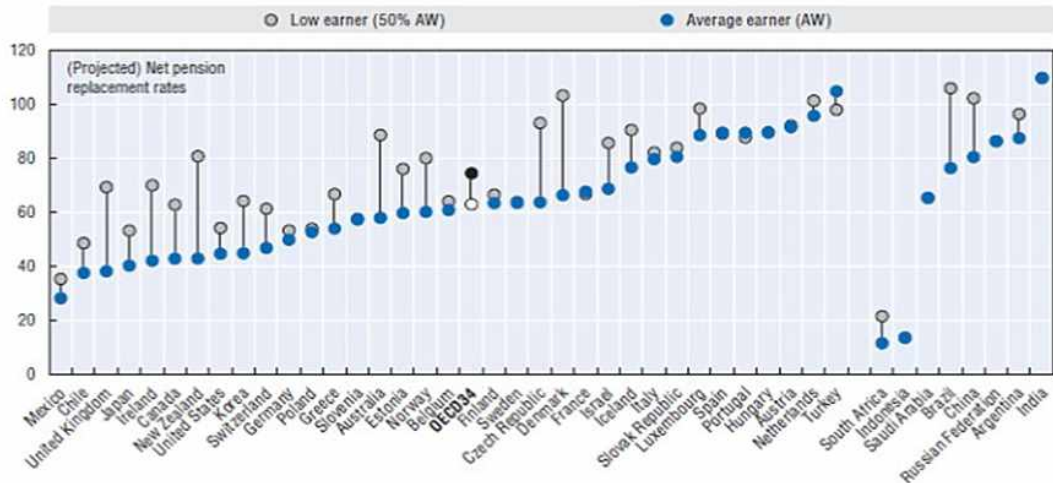
Note: The figure giv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Denmark 2015. Other supplements to the old (including housing) than the direct pension supplements (Supplement I: Pensionstillæg; Supplement II: Særlig pensionsydelse) are disregarded. Pensions are taxable income. 1 DKK is (July 2015) approx. 0.15 \$.

30

노후 소득보장 개편 :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은 국가마다 상이 : 선택의 문제, 그러나 지속가능성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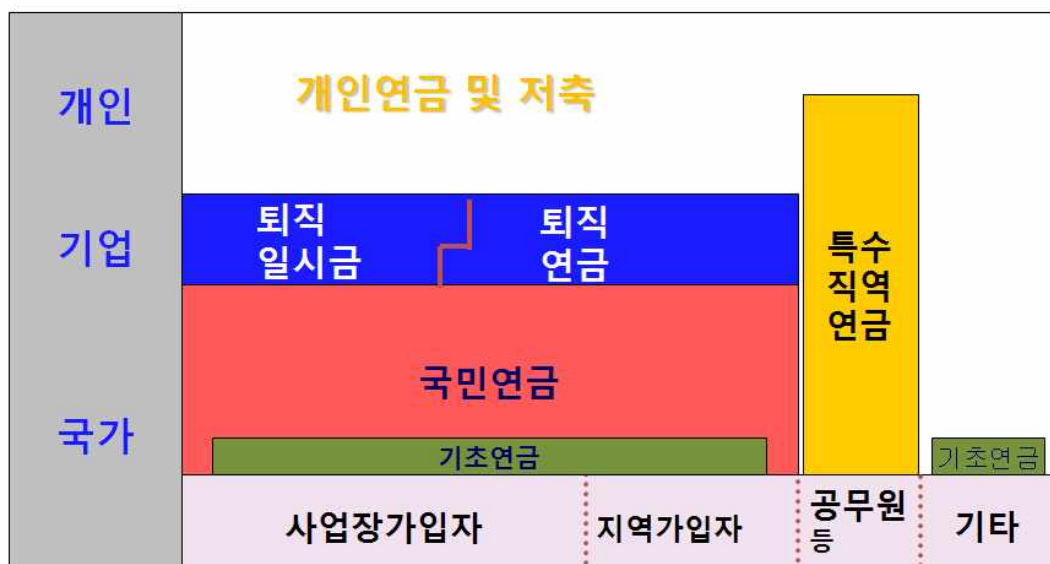
Figure 1.7. Future net replacement rates for low and average income earners in OECD and G20 countries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

노후 소득보장 개편방향 [진단]

- 지역별 분립형 연금체계 : 형평성 문제
→ 사적연금은 급속 성장 중이나, 소득보장 기능은 제한적



32

노후 소득보장 개편 : 전제 조건

기금운용 체계 개편

연금기금 660조원(2019.1)의 안정적 운용 체계 구축

공무원연금 등 형평

공무원연금 등과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국민연금 개편

기초연금 제도 조정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소득보장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능 개편

비용부담에 비하여 미미한 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

23

노후 소득보장 개편 : 기본 방향

소득 보장 청사진

정합성 있는 안정된 노후보장 방안을 구체화

지속가능성 담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재구축

세대간 형평성 제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수용가능한 대안 마련

경제적 현실 반영

저성장 국면과 경기침체 상황에도 feasible 한 제시

24

노후 소득보장 개편 방안 : 국민연금

기 본 방 향

소득보장 + 지속가능성 + 세대간 형평성

소득보장 수준

연금급여율 (40%), 연금급여율 (45%), 연금급여율 (50%)

연금수리적 균형보험료 상한 설정

보험료율 (16%), 보험료율 (18%), 보험료율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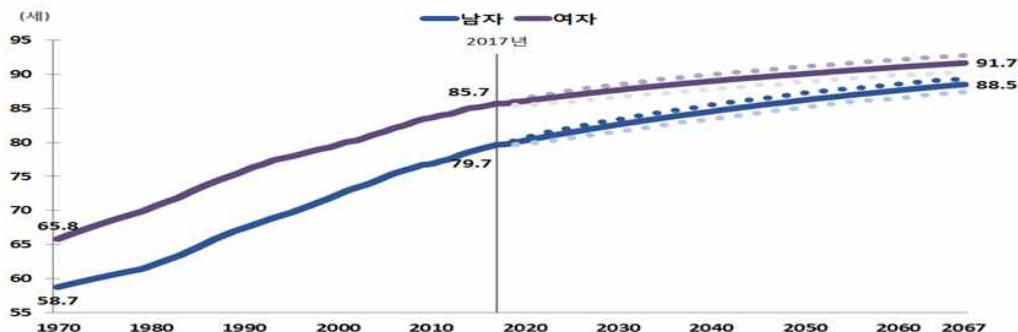
총 비용부담 수준 검토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과 퇴직연금부담금(8.3%) 조정 검토

국민연금 개편방안: 연금수급 개시 연령

- 자문위 안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조정 (65세 → 67세)
 - 1988년 기대수명 70.7세 2016년 82.4세로 연장
 -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에서도 67세, 68세로 조정 중
 -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 ➔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맞추어 정년도 단계적 연장

기대수명의 추이와 전망 (통계청)



36

국민연금 개편방안 : 의무가입 상한연장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조정 (현행 59세)
 - 의무가입 상한은 수급개시연령과 연동시킴이 원칙
 - 우리나라는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조정하면서 가입상한은 고정
 - 소득이 있는 경우만 부과 → 영세자영업자는 임의적용 방안 검토

주요국 수급개시연령과 의무가입연령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생연금	OASDI	CPP
가입상한연령	60세 미만	60세 미만	70세 미만	65세	70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2033)	65세	65세(2030)	67세(2027)	65세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제도	ATP 연금	국가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NDC 연금
가입상한연령	68세 미만	남 65세 미만 여 64세 미만	67세	65세 미만	없음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68세(2030) (기대여명에 연계)	남 65세 여 64세	67세(2029)	62세	61세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국민연금 개편방안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
 - 법률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 지급 책임
 -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장

법률상 지급보장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과 형평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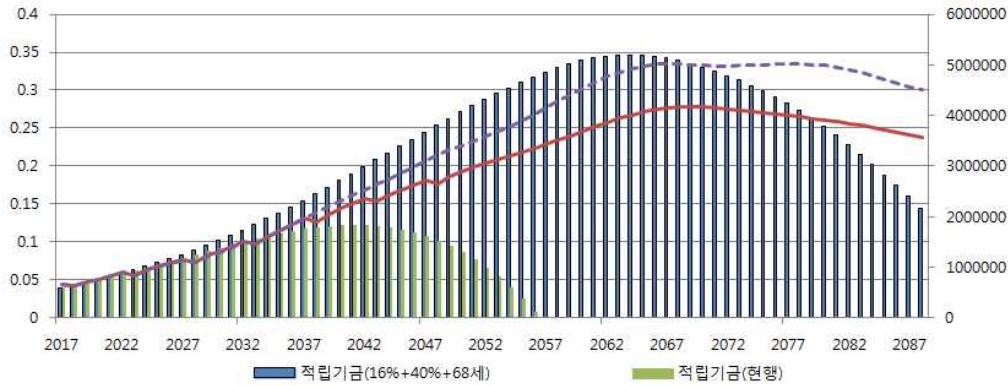
실질적 지급보장

연금 재정상으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증

연금보험료 부담 < 연금수리적 균형보험료

보험료 [16%]+연금급여율[40%]+수급개시연령 [68세]

➤ 국민연금 재정 : 적립기금 2096년 소진, 부과방식보험료율: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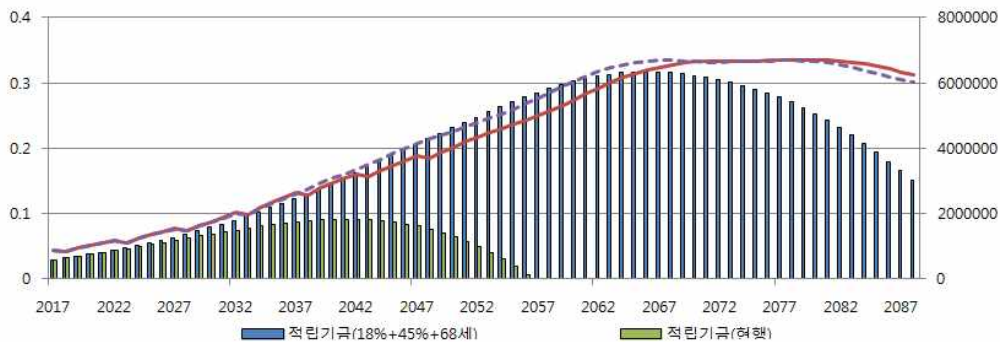


- ✓ 연금급여율 현행 유지, 연금보험료를 16%(2040년)까지 단계 인상
- ✓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 ✓ 2096년 적립기금 소진
-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26.3% , 2080년 26.0%

39

보험료 [18%]+연금급여율[45%]+수급개시연령 [68세]

➤ 국민연금 재정 : 적립기금 2097년 소진, 부과방식보험료율: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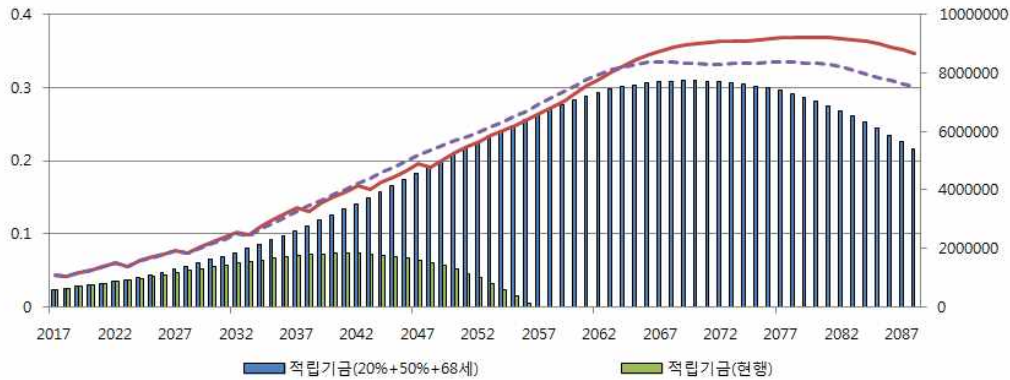


- ✓ 연금급여율 현행 유지, 연금보험료를 18%(2040년)까지 단계 인상
- ✓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 ✓ 2097년 적립기금 소진
-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30.0% , 2080년 33.5%

40

보험료 [20%]+연금급여율[50%]+수급개시연령 [68세]

➤ 국민연금 재정 : 적립기금 2102년 소진, 부과방식보험료율: 36.8%



- ✓ 연금급여율 현행 유지, 연금보험료율 18%(2040년)까지 단계 인상
- ✓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 ✓ 2102년 적립기금 소진
-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32.0% , 2080년 36.8%

41

부담구조의 개편 : 퇴직금전환금제도[1986년법]의 부활

1986년 법 제정

근로자 3.0% : 사용자 3.0% : 퇴직금전환금 3.0%

1998년 12월 법 개정

근로자 4.5% : 사용자 4.5% : 퇴직금전환금 삭제

퇴직금 부담금 일부 국민연금 전환 (16%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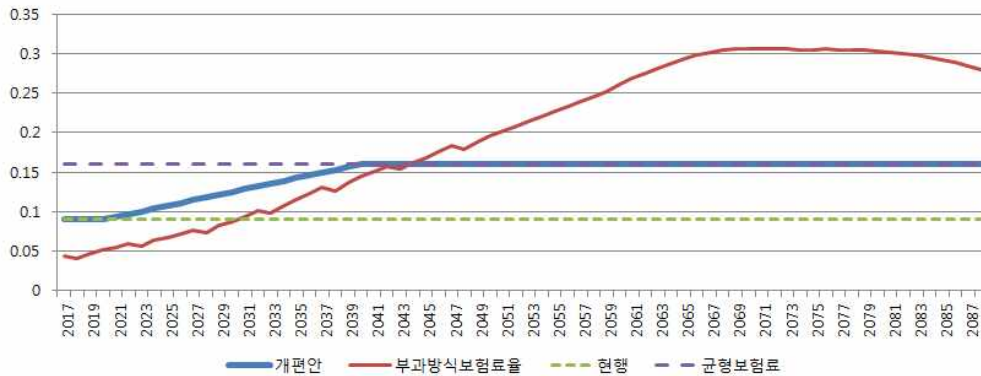
근로자 6.5% : 사용자 6.5% : 퇴직금전환금 3.0%

퇴직금 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정부 지원

퇴직연금 비적용 자영업자 중 저소득계층 정부 지원

연금보험료 단계적 조정 계획

➤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40년 완료



- ✓ 균형보험료 16% 기준으로는 노사가 각각 20년간 0.1%p 인상
- ✓ 퇴직금전환금 매년 0.15%p 이전 → 2040년 3% 수준 (퇴직금부담금 8.3%→5.3%)
- ✓ 균형보험료 18% 기준으로는 노사가 각각 매년 0.15%p 인상
- ✓ 균형보험료 20% 기준으로는 노사가 각각 매년 0.2%p 인상

기초연금 구조 재편

대상자·수급자

노인 하위 70% or 전체 노인 100%

급여수준

정액 (30만원) or 국민연금평균소득(A)값의 일정률

지급방법

2층 구조 =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or 최소 보장

재원조달

부과방식 운영 : 정부재정, 장기적 재원조달이 관건

퇴직연금 기능 개선

연금수급 가능성 제고

직장이동에도 연금수급가능한 상품환경 (Portability)

사적연금 Positioning

공적연금과 보완적인 상품 구성과 기금형 퇴직연금

재정 건전성의 확보

장수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건전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과 기능 조정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3%) 국민연금 보험료 전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옥 동 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1. 국민연금개편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의 3차례(2012, 2014, 2016)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확보하기 어려움(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6년, pp.61-66 참조).
 - 2060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적자를 일반재정에서 보전하지 않을 때 151.8%, 모두 보전할 때 191.1%로 전망
 -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처음으로 실토(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12월 4일)
- 국가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감안해야 할 이론적 변수들
 - 발권력: 기축통화, 산업경쟁력(외환시장의 안정성), 국내 여유자금(국채 소화)
 - 징세력: 정부신뢰와 조세수용도, 조세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유인
 - 재정운용의 신축성: 인구구조 변화, 의무지출과 경직성경비, 사회안전망 구축정도, 이익집단에 대한 견제, 갈등조정의 역량 등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근대 국가로서의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과 함께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에 필수적

2.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대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 필요.

- 2012년 기준 연령별 생애전체의 순혜택(=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수입 - 조세부담액)의 현재가치(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2012년, pp.153-155 참조)

연령	순혜택 (천원)	생애소득 대비 비율(%)	연령	순혜택	생애소득 대비 비율(%)	연령	순혜택	생애소득 대비 비율(%)
0	△340,263	△ 22.2	30	△211,091	△ 18.8	60	78,676	16.2
5	△336,505	△ 21.8	35	△162,395	△ 17.1	65	82,090	26.5
10	△326,106	△ 21.6	40	△123,922	△ 15.7	70	80,332	52.8
15	△317,428	△ 20.6	45	△ 81,807	△ 13.6	75	77,552	93.8
20	△296,401	△ 20.7	50	△ 38,151	△ 8.8	80	87,008	578.7
25	△253,530	△ 19.7	55	3,230	4.5	-	-	-

- 앞의 표는 이전지출, 조세 등 현금지출입을 반영하고 있으나 SOC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최근 세대의 ‘삶의 질’ 개선 편익은 반영되지 않음.
- 연령대별 파악이 가능한 이전지출과 조세를 연계시켜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
 -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노령자 부양을 위한 지출은 50세 이상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회계, 기금 또는 계정체계 정비
 -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SOC 신규투자(유지보수가 아닌)는 50세 미만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회계, 기금 또는 계정체계 정비
 - 관련 조세·부담금 수입을 특정한 지출에 용도지정(earmarking)하는 체제를 구비하여 편익과세(benefit taxation) 또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 확립
-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은 편익과세와 페이고 원칙에 부정적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고 하여 국민연금 지급액 변경의 법률 개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회 의결 없이 국민연금 지급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사실은, 국민 모두)가 보장한다는 상징적·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편익과세와 페이고 원칙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는 재정운용에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음.

3. 경기부양효과는 재정확대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음.

- 최근의 거시경제이론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 또는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때 민간의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증대되어 경기가 부양된다는 실증적 연구

- 거시경제이론에서 피구효과는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경기부양효과인데, 정부의 직접 지출뿐만 아니라 정부 대차대조표(국가재무제표) 상의 보유 자산 증대 역시 경기부양 효과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및 보험의 적립금 증가도 경기부양효과를 갖고 있음.

4.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정치중립적(전문적) 시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정이슈를 꾸준히 제기하는 체제가 정비될 필요.

- 재정의 궁핍을 알아야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窮卽變),
우리가 변화하고자 할 때 서로가 통할 수 있으며(變卽通)
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정은 지속가능하게 된다(通卽久)

-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대비하지 못한 우리 선조들만 탓할 것인가! <끝>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곽 관 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I. 총설

- ☐ 발표자께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관련제도와의 관계등을 고려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할까 함

II. 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1.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응

-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설계당시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적립된 기금의 고갈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를 설계하였던 KDI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예상하였음.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2010년 이전에는 연금수급자 수가 적어 지출액 증가폭이 완만하나 2020년경(30년 이후)에는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당해 연도 수지 차는 적자(-)를 시현(示顯)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누적적립기금은 2000년에는 29.7조원에 달하고, 그 후 매년 확대됨으로서 2040년경에는 1,559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4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적립기금이 450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DI,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관련과제 연구」(1986.2), 598-599면

-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예상하고 있었음

재정지출이 거출료수입을 상회하는 시점은 2032년이며 그 이후에는 누적적립기금과 그동안의 이식(利殖)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게 될 것이며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시점은 2049년임. 따라서 최소한 10년 이전에 거출료율의 상향조정을 포함한 재정운용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출처 : KDI,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관련과제 연구」(1986.2), 598-599면

- 실제 제4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국민연금 설계당시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원칙 명확화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원칙으로는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제시됨
- 국민연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KDI보고서에서는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으로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제시하였음
-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적립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신규조정자금액을 50:50으로 양분하여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 양분하고, 공공부문에 배분된 자금은 전액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되어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지원, 농어촌 개발 등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수단으로 사용하였음
 - 이러한 과도한 공공투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그러나 기금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으며, 아직 국민연금 급여가 시작되지 않아 기금에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공자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민연금제도 시행초기에는 기금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적었으나, 국민연금보험료율이 6%로 인상되고 기금의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자법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을 국회동의도 없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됨

* 공자법은 SOC투자,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 전액을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특히 이 법에서는 여유자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없이 재무부장관 결정으로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자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1995년 위헌소송이 제기됨

* 시민단체는 공자법이 강제예탁규정을 두어 그때 그때의 연금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드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일방적으로 ‘여유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그 조성의 주체인 보험가입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재정자금에 강제예탁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였음. 즉, 정부가 국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었음.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기금운영에 있어 수익성이 중요하므로 금융부문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음

□ 위헌소송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안정성이라고 봄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요청된다(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 참조). 이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한지 오래된 사회보장의 선진제국들에서도 여유기금의 전액을 국·공채 매수에 투자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여유기금을 국·공채 매수 등의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쉽사리 알 수 있다”(헌재 1996.10.4. 96헌가6)

- 헌법재판소는 구조적으로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한편, 판례에서는 수익성을 최우선적 목표라고 본 소수의견도 제기됨

“국민연금기금은 조세징수에 의한 재정자금과는 다른 연금가입자들의 각출료납부로 조성된 순수한 민간기금이므로 정부가 사용자로서 각출료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이 갖는 공공성을 국고지원이 없는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금기금은 장래의 연금급여를 위하여 적립중인 책임준비금으로서 가급적 기금자체내에서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용수익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할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간주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재정의 운용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반한다.”(헌재 1996.10.4. 96헌가6)

- 소수의견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은 동일하지만, 다수의견과 달리 운용수익의 최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수익성이 최우선 목표라고 보고 있음

□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자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5%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헌재판례 및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끝)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김 우 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 지속가능성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적립금이 소진(2057년)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어, 현재의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 저출산 현상 심화로, 적립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30.35%)은 비현실적 수준으로 급등(현재 요율의 3.4배)
- 미래인구추계 결과의 호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미 세대 간 갈등이 점화된 상태이며, 청년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
- 여기에 더해,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회의론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정부의 대응: 잦은 입장 변화와 정책 leadership의 약화

- 2018년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보험료율 인상(13.5%)안은 비판적 여론으로 철회
- 2018년 12월 정부의 최종안(4개 개편안): 기초연금 인상, or 요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 2019년 8월 경사노위 3개 개편안: 요율·소득대체율 인상 or 요율만 소폭 인상
- 2019년 10월: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45% 상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는 경사노위의 다수 안에 기초해 단일안을 준비하여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

□ 정부가 단일안으로 검토 중인 방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의 한계

-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동시에 제고하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
- 현행 제도에 비해 기금 소진 시점을 단지 6년 연장('57년->'63년)하는 것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함

- 적어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한 기본적인 동기마저 무색해질 위험이 큼
-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되는 점을 들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나,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거의 개선되지 못한다는 점이 곧이어 알려지게 되면, 정부 단일안에 대한 비판과 역풍만 거세질 수 있음
- 보험료를 인상이라는 불가피한 정책방향을 정부가 어렵사리 선택했음에도, 그 결과는 연금제도의 안정화와 급여의 내실화를 모두 놓치는 실패작으로 평가될 공산이 큼

□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좌초되고 있는 근본 원인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의 당면 과제는 일부 모수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정도로 해결 가능하지 않음
- 고령화·저출산·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국민적 수용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복지부가 지난 2년 동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정책목표들을 추구하였기 때문임
- 우리 국민과 정부 간에 제도 개편의 이유와 궁극적인 지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의 일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혼란만 가중되거나 피상적인 절충안으로 본질적 문제를 잠시 봉합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의 혼란과 시간낭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상충적인 정책목표들 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서부터 연금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함

- 개혁이 단순한 개편과 구별되는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임기응변적인 절충안이 아닌 개혁적인 개편안임
- 인구사회적 환경변화 하에서 현행 제도로는 국민연금의 기반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명확함
-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유지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나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분석·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노력이기 때문임
- 따라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장기적 이익의 추구가 제도 개편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함

- 이 전제 하에서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단기적 고통의 감수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함
- 정책 leadership의 요체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설득하는 것에 있음

□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개혁적 연금 개편안 도출 방법**

-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정부 대신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선택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어려움
- 정부가 연금개편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정치적으로 대립된 상태의 국회가 단일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으로도 부족함
- 그보다는 내년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이 자신의 구체적인 연금 개편안(여당안 = 정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전문적 검증과정을 거친 후 투표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임

[토 론 4]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곽 은 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은 성인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50년 후에는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막대한 세금과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사회가 세대갈등을 빚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들을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될 당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직까지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기금이 쌓이고 있지만, 2060년경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기금고갈이 예상된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지우는 제도 개선해야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현재의 연금수급자 보다 덜 받게 된다. 쌓여 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해 지급해야 할 연금을 그해 근로자로부터 걷어야한다. 과연 미래세대가 ‘덜 내고 덜 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내면서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에 수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누구도 ‘덜 내고 더 받는’ 지금의 시스템을 변경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눠주겠다고 약속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연금 지급비율을 높이겠다고 한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 때문인지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험료를 ‘더 내는’ 개

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이를 12~1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4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 2안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안과 4안은 보험료를 일부 올리면서 지급액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다. 4가지 중 어떤 방안을 택하더라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부담 수준은 소득의 30% 이상이 된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금나와라 똑딱! 하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기금고갈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정치권은 어렵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여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해야

국민연금 수익률도 제고되어 한다. 연금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기금고갈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한다. 2018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0.92%로 5조 8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4~2018년 5년 수익률 성과도 4.18%에 그친다. 같은 시기 캐나다 공적연기금 10.98%, 스웨덴 공적연금 6.78%, 네덜란드 공적연금의 6.4% 보다 낮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맡기고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며,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어렵다.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여지가 높다.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을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이나,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를 늘리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운용방안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사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도입취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입

맞대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다. 실제 스투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는 외국의 기금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운영된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기금 수익률을 높여 가입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만 고려할 뿐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낮다.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 노후에 제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을 서두르고,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 내가 납입한 연금이 잘 저축되어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수익률이 낮을 경우 다른 운영기관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 스스로가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생긴다.

<MEMO>

[illegible]

[illegible]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승희

<http://blog.naver.com/shkim2756>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합니다.



consumerwatch@naver.com
<http://www.consumerwatch.kr>